

##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

1. 공급위치 :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320-2번지 일원
2. 공급규모 및 내역 : 아파트 지하 2층, 지상 25층, 총 7개동 아파트 632세대 중 일반공급 339세대 및 복리시설
3. 기관추천 특별공급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 : 10% 범위 내」

### ◎ 신청자격

- 대상자 :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해당하는 자(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, 중소기업근로자, 대한민국체육유공자, 군인)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)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

※ 중소기업근로자, 군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조건을 충족하여야 함.

- ① 청약예금 : 85㎡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을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자
- ② 청약부금 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㎡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
-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인정 금액이 85㎡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
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 (다자녀·신혼부부·노부모·생애최초특별공급 포함)을 받은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 불가  
(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. 단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제 1호 제외)

구분	39.7540㎡	59.9920㎡	59.7720㎡	84.9960㎡	84.9980㎡	계
기관추천특별공급	7세대	7세대	6세대	10세대	2세대	32세대

※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.

### 4. 당첨자 선정방법

◎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또는 해당기관의 확인서(추천서)를 발급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. ( 미 신청 시 당첨자선정(동·호배정) 및 계약불가 )

◎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.

◎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이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 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는 주택 공급신청(특별 및 일반공급)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,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(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)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.

◎ 각 타입별 공급세대를 초과하여 특별공급신청자의 경쟁이 발생할 경우 추첨 방식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할 수 있음.